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- 175호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161호, 2022.6.29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22년 7월 13일

보건복지부장관

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(발체)

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편 제2부 제10장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차-99-1 골격성 고정원 제거 [양측]란 다음에 차-100 타액선 도관 세정술 [도관 당]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022년도 환산지수 90.7 기준

분류번호	코드	분 류	점 수	비용 (원)
차-100	U4995	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타액선 도관 세정술 [도관 당] Intraductal Irrigation of Salivary Gland 주: 「다-209 타액선조영」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.	431.34	39,120

부 칙

이 고시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편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	제1편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
제2부 행위 급여 목록·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	제2부 행위 급여 목록·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
제10장 치과 처치·수술료	제10장 치과 처치·수술료
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	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
<u><신설></u>	차-100 <u>타액선 도관 세정술 [도관 당]</u>
<u><신설></u>	<u>Intraductal Irrigation of Salivary Gland</u>
	U4995 주: 「다-209 타액선조영」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
	43
	<u>1.34점</u>